

교육역량강화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 2010. 06. 17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“교육역량강화사업”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① 사업계획 및 사업비집행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
- ② 사업추진을 위한 교무 및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
- ③ 사업추진에 따른 우수학생 유치 및 장학업무에 관한 사항
- ④ 사업추진에 따른 산학협동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
- ⑤ 사업단의 사업추진실적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
- ⑥ 본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- ⑦ 기타 사업단 추진과 관련된 사항

제3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학생지원처장, 입학홍보처장, 사무처장, 학술정보원장, 산학협력단장, 취업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- ③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학내·외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4조(간사) 위원회는 기획예산부에서 주관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제5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규정 제2조 ⑤항의 수행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
-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선임한 약간 명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매 학년도 사업개시에 함께 구성하고 사업추진실적과 예산의 집행에 관한 심의 및 평가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6조(회의록작성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불비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747, 2010.6.17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은 매학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.